

# 배둔도시계획재정비 입안사항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783호)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1. 28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2. 11. 30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2. 12. 26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재검토요구

### 2. 제안이유

- '97년 5월 17일(경남도 고시 제132호) 최종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된 후 도시기능의 확장과 주변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장래 도시개발 여건 수용 및 미래상 구현을 위해 현실여건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입안하고 용도지역 세분화 검토와 회화면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개발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도출하여 도시 내부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각 생활권의 원활한 교통체계 정비, 군민생활의 편익도모 및 지역균형 개발을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위한 건임.

### 3. 주요골자

“붙임 참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의견청취의 건은 경남도 고시 제132호로 1997년 5월 17일 최종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된 배둔 도시계획을 이후 도시기능의 확장과

주변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장래 도시개발 여건 수용 및 도시기능의 미래상 구현을 위해 현실여건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개발 계획을 입안 하고,

- 각 생활권의 체계적인 정비로 도시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므로서 주민생활의 편의도모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22조에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음.
- 재정비 입안 내용을 보면 전체 도시계획 구역의 변동은 없으며, 구역내 용도지역이 변동된 사항으로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 또는 제1종,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세분화 되었으며, 일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 함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장래 도시개발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였고, 그 외 그동안 구획 오차 부분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도시계획시설 부분에는 교통시설 변경으로 도로 일부의 선형변경이 있으며, 자동차 정류장의 역할 축소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자동차 정류장 변경(축소)이 있음.  
자동차 정류장 용도지역 축소변경에 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 그동안 동 건과 관련하여 배둔도시계획 재정비계획 행정예고,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다고 보아지며, 타당성 있는 의견은 계획입안에 반영 하였으며, 재정비 입안 공람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며,
-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항으로 장래 도시 기능과 현실 여건을 반영한 입안이라고 판단되므로 배둔 도시계획 입안 사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입안 검토서 내용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음.

## 5. 질의 및 답변

- 문 :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등 설명바람.
- 답 : 주거지역의 구분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제1종이 자연녹지 쪽에 가까우며, 공간범위가 넓은 의미이고 제2종·제3종 준주거지역으로 갈수록 시가지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각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 문 :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도지사 허가 사항 이지요?
- 답 : 본 재정비안은 군수가 입안하여 도에 신청하면 결정은 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임.
- 문 : 각 용도지역이 도로를 끼고 나누어지는데 도로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 답 :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중 교통시설 부분이며, 각 용도지역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음.
- 문 : 계획안의 교통시설중 자동차 정류장 규모가 축소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답 : 최초 결정당시(1989.12)에는 대중교통의 의존도가 높고 터미널 이용인구와 차량노선이 많아 차고지 등을 감안하여 계획 하였으나 현재는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되어 더 이상의 시설확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토지이용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 규모 축소하는 것임.
- 문 : 현재까지 자동차 정류장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면적을 축소시킨 부분은 상업지역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살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 답 : 자동차 정류장의 역할 감소 추세에 따른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계획안이며, 특혜 의혹부분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못하였음.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음.

- 문 : 주민의견 청취와 주민 설명회시 자동차 정류장과 관련한 안에 대하여 주민의 이견은 없었는지?
- 답 : 자동차정류장 관련한 이견은 없었음.
- 문 : 1997년 변경고시 이후 축소하고자 하는 자동차정류장 부지의 소유자 변경은 없는지?
- 답 : 일부 필지는 소유자 변경이 있었음.
- 문 : 소유자 변경이 있었다면 더욱 의혹 제기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자동차정류장 운영자가 경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초 운영자가 소유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소유권 변동이 있었던 토지를 변경시키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답 : 축소시키는 부분이 처음부터 자동차정류장 운영자 소유는 아니었음. 특해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자동차정류장 축소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음.

6. 토 론 : 없음

## 7. 심사결과

- 2002. 12. 26 출석위원 전원 재검토 하도록 요구